

● 제28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659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19. 5. 23.
- 다. 회 부 일 : 2019. 5. 30.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884억 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5억 3천 4백만원(1.4%)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234억 6천만원에서 25억 3천 4백만원 증가(2.1%)한 1259억 9천 4백만원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예산	2019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193,091	188,406	185,872	2,534(1.2)
세외 수입	경상적	39,891	-	40,795	0
	임시적	18,625	-	20,831	0
지방교부세		250	-	-	-
국고보조금 등		133,650	125,994	123,460	2,534(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4	-	786	0

나. 세출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872억 4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2억 7천 2백만원(3.7%)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예산	2019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472,038	487,241	469,969	17,272(3.7)
행정운영경비		7,804	8,063	8,063	0(0)
재무활동		2,477	599	-	599(-)
사업비		461,758	478,579	461,906	16,673(3.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총괄 검토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기정예산 4,699억 6천 9백만원 대비 172억 7천2백만원 증가(3.7%)한 증가한 4,872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국비내시 감소분으로 인하여 사업비 중 10억 8천 7백만원이 감추경 제출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5억 9천 9백만원 및 사업비 177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487,241	469,969	△1,087	0.2	18,359	3.9
행정운영경비	8,063	8,063	0	0	0	0
재무활동	599	-	0	0	599	-
사업비	478,579	461,906	△1,087	0.2	17,760	3.8

- ※ 총 42개 사업 중 17,272백만원 (국비 2,534백만원, 시비 14,738백만원)
 - 증액사업 : 36개 사업 총 18,359백만원 (국비 3,466백만원, 시비 14,893백만원)
 - 감액사업 : 6개 사업 총 1,087백만원 (국비 932백만원, 시비 155백만원)

- 대상사업은 총 42건으로 증액사업 36건 183억 51백만원, 감액사업 6건 △10억 87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신규사업 포함)안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3,926백만원)
 -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1,200백만원)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50백만원, 신규)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사업(218백만원, 신규)
 - 난임부부 지원(5,311백만원)
 -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470백만원)
 - 서울형 유급병가(2,054백만원)
 -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500백만원, 신규)
 -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1,606백만원, 신규)¹⁾

1) 보건환경연구원

2 세입 추경안 검토

- 세입은 1,884억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25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름. 국고보조금의 경우 1,234억 4천 6백만원에서 1,259억 9천 4백만원으로 2.1% 증가하였음.

<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예산	2019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193,091	188,406	185,872	2,534(2.1)
세외 수입	경상적	39,891	-	40,795	0
	임시적	18,625	-	20,831	0
지방교부세		250	-	-	-
국고보조금 등		133,650	125,994	123,460	2,534(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4	-	786	0

가.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은 2019년 서울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신규사업의 발생, 기존사업계획의 변경, 예산부족, 국비변경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안임.
- 주요 신규사업은 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및 국고보조금 반영분 39억 2천 6백만원(국비 2억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매칭),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사업(2억 1천 8백만원),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동물복지지원사업 5억원,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6억 6백만원 등임.
- 주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출예산 변동사항은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12억원,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예산 국비매칭(53억 1천 1백만원), 서울시 남녀건강출산 지원 4억 7천만원 등임.
- 반환금 및 기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과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보건의료정책과 1억 8천 8백만원, 건강증진과 6천 6백만원, 식품정책과 1억4천만원, 질병관리과 9천 4백만원, 동물보호과 5백만원, 보건환경연구원 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감추경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국비△1억 2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비 △6억 3백만원,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비 △2천만원 시비 △8백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국비 △8천만원, 병원감염관리-의료감염별 표본감시체계 운영 국비 △

8천 1백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국비 △2천 8백만원
 시비 △2천 7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사업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5건 18억 9천 1백만원, 어린이병원 1억 9천 9백만원, 은평병원 1억 4천 3백만원, 서북병원 1억 6천 5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x123,460) 469,969	(x2,534) 17,272	(x125,994) 487,241	3.7	42
보건의료정책과	(x14,747) 159,276	(x△384) 5,120	(x14,363) 164,396	3.2	11
건강증진과	(x47,352) 122,480	(x2,703) 6,349	(x50,055) 128,829	5.2	7
식품정책과	(x3,940) 10,616	(x53) 245	(x3,993) 10,861	2.3	3
질병관리과	(x53,469) 125,348	(x162) 2,545	(x53,631) 127,893	2.0	5
동물보호과	(x784) 6,311	(x0) 615	(x0) 6,926	9.7	4
보건환경연구원	(x1,369) 13,690	(x0) 1,891	(x1,369) 15,581	13.8	5
어린이병원	(x18) 8,388	(x0) 199	(x18) 8,587	2.4	2
은평병원	(x158) 7,009	(x0) 143	(x158) 7,152	2.0	2
서북병원	(x1,622) 16,852	(x0) 165	(x1,622) 17,017	1.0	3

○ 이 외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x123,460) 469,969	(x2,534) 17,272	(x125,994) 487,241	
보건의료정책과		(x8,562) 30,453	(x△384) 5,120	(x8,178) 35,572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x2,250) 19,842	(x250) 3,926	(x2,500) 23,768	<p><시비> ◦공공난입센터 설치(시설비 및 의료장비 등)</p> <p><국비 매칭> ◦국비 확정내시 변경 - 병리와 자동슬라이드염색기 및 봉입기 등 총 5종(6점)</p>
2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x230) 362	(x9) 13	(x239) 375	<p><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증액</p>
3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x269) 608	(x△120) △240	(x149) 368	<p><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p>
4	응급의료기관 지원	(x5,731) 5,731	(x△603) △603	(x5,128) 5,128	<p><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p>
5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x82) 142	(x△20) △28	(x62) 114	<p><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p>
6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1,400	1,200	2,600	<p><시비> ◦하반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증액</p>
7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	2,367	200	2,567	<p><시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확산을 위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위한 증액</p>
8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사업 운영	-	218	218	<p><시비> ◦정신질환자 욕구 및 기능에 적합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주택 사업비 증액</p>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9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	(x100) 200	(x100) 200	<국비 매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국비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10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	-	50	50	<사비> ◦정신질환 및 자살 등 응급상황에 적극적 대처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11	반환금및기타	-	183	183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건강증진과		(x4,498) 8,806	(x2,703) 6,349	(x7,201) 15,156	
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x459) 786	(x185) 330	(x644) 1,116	<국비 매칭>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개소 추가 공모 지정 ※ 서울재활병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 증액(25명→32명)
13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	(x30) 60	(x30) 60	<국비 매칭>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개소 추가 공모 지정 ※ 서울재활병원
14	난임부부 지원	(x186) 403	(x2,451) 5,311	(x2,637) 5,714	<국비 매칭> ◦대상자 선정 및 내용 변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변경
15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94	64	458	<사비> ◦임신, 출산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신규기능 적용
16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570	470	1,040	<사비> ◦서울시 난임 종합지원서비스 실시에 따른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확대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연령제한 폐지 및 남성 정액 검사 신규 추가
17	통합 방문건강관리	(x3,853) 6,653	(x37) 48	(x3,890) 6,701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자치구 보조금 국비 추가교부
18	반환금 및 기타	-	66	66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식품정책과		(x252) 515	(x53) 245	(x305) 760	
19	축산물 수거검사-축산식품 안전관리 경상경비, 자치단체 감시원 운영	(x22) 45	(x3) 5	(x25) 50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20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바른생활교육원	(x230) 470	(x50) 100	(x280) 570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1	반환금 및 기타	-	140	140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질병관리과		(x37,189) 89,748	(x162) 2,545	(x37,350) 92,293	
22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x244) 244	(x△80) △80	(x164) 164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23	서울형 유급병가	4,142	2,054	6,196	<사비> ◦보건복지부 행복e음 사용으로 별도 전산시스템 신규 개발 불필요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에 따른 대상자 증가
24	병원감염관리-의료 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x396) 396	(x△81) △81	(x315) 315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25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 국가예방접종 실시	(x36,549) 84,966	(x323) 558	(x36,871) 85,524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26	반환금 및 기타	-	94	94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동물보호과		1,134	615	1,749	
27	서울반려동물교육 센터 운영	209	10	219	<사비> ◦고양이 입양카페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반영
28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925	100	1,025	<사비> ◦중증 유기동물 이송 서울시 전역 확대에 따른 증액
29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	-	500	500	<사비>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입시보호 등
30	반환금 및 기타	-	5	5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보건환경연구원		(x99) 1,052	(x-) 1,891	(x99) 2,943	
31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855	215	1,070	<사비> ◦토양환경보전법, 등 법정 항목 신규 추가 및 분석방법 개정으로 인한 장비구매 필요
32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x99) 197	(x△28) △55	(x71) 142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내역사업 분리)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강화				
33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자본)	-	(x28) 55	(x28) 55	<국비 매칭>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내역사업 분리)
34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	-	1,606	1,606	<시비>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 측정분석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35	반환금 및 기타	-	70	70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어린이병원		-	199	199	
36	어린이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	101	101	<시비> ◦돌봄 분야 통합브랜드 '서울케어'의 적용 및 확산
37	어린이병원 공기청정기 구입	-	98	98	<시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
은평병원		-	143	143	
38	은평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	69	69	<시비> ◦돌봄 분야 통합브랜드 '서울케어'의 적용 및 확산
39	은평병원 공기청정기 구입	-	74	74	<시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
서북병원		-	165	165	
40	서북병원 서울케어 브랜드 확산	-	60	60	<시비> ◦돌봄 분야 통합브랜드 '서울케어'의 적용 및 확산
41	서북병원 공기청정기 구입	-	64	64	<시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
42	국고보조금 반환	-	41	41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 편성

나. 세부 사업별 검토

- 추경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비의 수정 사유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 타당성 절차 이행 여부, 추경을 통한 예산 집행액 대비 사업의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사업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공공난임센터 설치)

(1) 추경안 개요

-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안과, 국비내시된 예산을 매칭편성하는 안으로 총 39억원 편성되었음. 국비매칭액은 국시비 각 2억5천만원이며 난임센터 설치와 관련한 예산으로 시설비 14억3천만원, 장비비 19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x-) 5,026,493	(x-) 1,600,000	(x-) 3,426,493	공공난임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 등 - 난임 외래진료 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비 : 1,430,490천원 - 난임 센터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초음파진단기 등 총 167점) : 1,966.003천원
민간자본	(x2,500,000)	(x2,250,000)	(x250,000)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보조 (이전재원)	5,000,000	4,500,000	500,000	국비 및 매칭 시비 증액 추가 반영 - 병리과 자동슬라이드염색기 및 봉입기 포함하여 총 5종(6점)
----------------	-----------	-----------	---------	---

(2) 추경안 검토

① 추경안의 발생 배경

- 서울시의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제안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제에 대하여 서울시는 지난 '19. 3. 26. 개최한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채택한 바, 이를 추경안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정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는 이 외에도 난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건 추가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 2건의 사업은 난임부부지원사업(53억 1천만원).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4억 7천만원) 등임.

○ 의 제 :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토론기간 : '18. 12. 14 ~ '19. 1. 13(30일)

- 투표참가 : 5,259명 (찬성 5,115 / 반대135 / 기타 5)

② 난임센터의 역할

- 집행부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난임센터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임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는 바, 대표적으로 (인공수정)체내수정과 체외수정의 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의학적으로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하고 있음.
- ※ 난임의 원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원인불명’이 53.7%²⁾, 난관요인 14.7%, 배란요인 6.3%, 남성요인(단독) 7.9% 등으로 나타나며 부부 모두 난임인자가 있는 경우는 3.5%로 나타남.
-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난임원인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원인불명 난임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남성요인(33.3%)이 가장 높았고, 25~44세 층은 난관요인(25~29세 21.7%, 30~34세 17.2%, 35~39세 14.5%, 40~44세 12.0%), 45세 이상은 배란요인(10.6%)임.³⁾
- 난임의 원인이 남녀 모두에게 있으며 단순히 여성의 신체적 기능 이상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산부인과적 질환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등 다학제적 진료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임센터신설 사업은 난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③ 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설립계획

- 서울의료원은 2019년 4월 난임센터에 대한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⁴⁾ 서울의료원은 ‘민주주의 서울’의 공식 답변으로서 서울시의 공공난임센터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2) 원인불명의 난임이 임상적으로 알려진 30% 수준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성단독 난임의 비율(34.9%)과 비슷한 남성 난임이 부부 양측 난임 보유비율을 합하여도 11.4%에 불과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출처: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 서울:보건복지부

3) 상기 통계치의 구체적인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업참여자에 대한 분석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4) 서울의료원 내부문서: 2019.4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안)

- 그러나 ‘난임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당사자단체⁵⁾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토론회 참여자와 답변자 간 이견이 있다고 사료됨.

○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난임센터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

- (당사자단체가 원하는)시술비 지원은 정책적 한계 발생(희귀난치성질환 등 특정질환 환자들도 본인부담금 발생)

- 보장성 강화와 난임진료에 대한 수준 높은 적정진료와 적정비용으로 정책 운영의 보완과 만족도 높일 수 있음.

- 질 높은 난임진료와 적정진료(비급여 최소화) 제공으로 민간의료기관의 독과점 견제 및 적정의료 수가 견인 가능

- 국가 및 서울시의 출산 지원 정책의 보완으로 난임부부에게 수혜 제공

○ 당사자단체가 제기하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유명 난임기관의 진료중단(J병원, M)으로 인해 발생한 유희인력인 난임 분야 우수 인력을 난임센터에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5)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https://cafe.naver.com/monnbaby>)

④ 당사자단체(또는 시민)⁶⁾ 주장

- 공공난임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언론 및 당사자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먼저, 당사자단체에서는 공공난임센터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음.

서울시립의료원⁷⁾ 공공난임센터 설립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서울 간담회때 난임인들이 요구드린것은 (1) 보건소 주사 맞기 (2) 건보 나이 및 횟수 제한 완화 (3) 보건소 지원금 소득 180% 밴드 해제 (4) 산전검사시 난소 나이 검사항목 필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들은 난임센터 설립을 요청드린적이 없습니다.

이** 2019-05-29 10:31:26

- 또한 이들의 의견은 대부분 난임시술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는 최근 정부지원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난임 시술 7회까지 지원)이 소진될 경우에는 그 이후의 난임 시술에 대한 금전적인 개인 부담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 당사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공공난임센터 설치에 대한 지지는 1.4%로 나타나며 시술비지원의 경우 89.1%로 나타남.

6) 당사자단체가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 수 있으나, 현재 해당 단체의 회원이 서울시의 난임정책 tt에 참여하고 있어 관에 의하여 대표성을 일부 담보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당사자단체의 공적인 책임성(법인격)등은 부재하는 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는 시민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서울시의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이 의도한 대로 이들의 의견 중 일부를 검토보고서에 요약하여 실음.

7) 서울의료원에 대한 오기로 추정됨.



출처: 2019. 5. 31. 동아일보 "난임 여성들 공공난임센터 반대 왜?"

⑤ 절차적 타당성

- 공공난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전 사전에 집행하고자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먼저, 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분으로 서울의료원은 예산의 심의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서울의료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예산의 심의 이전에 예산편성을 가정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던 정황이 파악됨.
-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짐.
 - 이와 관련 서울의료원 측은 강남미즈메디, 제일병원의 폐원 뒤 2곳에서 근무한 경험 많은 난임 시술 관련 인력들을 충원 중이라고 밝혔음.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난임 전문의 3명, 외래 간호사 7명, 연구원 6명을 이미 뽑았고, 연구원 3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시술을 펼쳐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음.⁹⁾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난임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을 제시한 바 있음.
 - 출연기관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서를 자체적으로 수정·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예산편성전 사전 집행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의료원 예산서에 난임센터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예산성립전 예산심의의 통과를 가정하고 필요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이는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문란한 예산 집행 행태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하겠음.

9) 해럴드경제 2019. 5. 31. 「서울시 공공난임센터 줄속 추진 우려…“난임부부 눈물 닦아주신다면서요?”

<표>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문

연 번	공고번호 -차수	분류	공고명	공고 기관	금액	입력일시
						(입찰마 감일시)
1	20190539054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전기 공사(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2,146,000	2019/05/3 0 17:19
						(2019/06/0 5 10:00)
2	20190539543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기계설비공사(공공난임 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1,524,000	2019/05/3 0 17:18
						(2019/06/0 5 10:00)
3	20190539559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통신 공사(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2,146,000	2019/05/3 0 17:17
						(2019/06/0 5 10:00)
4	20190539157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건축인테리어 공사(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325,556,590	2019/05/3 0 14:18
						(2019/06/0 5 10:00)
5	20190538974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통신 공사(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2,146,000	2019/05/2 8 18:56
						(2019/06/0 5 10:00)
6	20190539484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기계설비공사(공공난임 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1,524,000	2019/05/2 8 18:36
						(2019/06/0 5 10:00)
7	20190538885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통신 공사(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1,147,30,000	2019/05/2 8 15:52
						(2019/06/0 5 10:00)

- 서울의료원은 난임센터 설치와 관련한 여론이 악화되자 기존의 입찰공고를 모두 취소하였음. 그 뒤 새로운 입찰공고문을 올렸는데 이는 상기 <표>의 4번 항목과 같은 금액과 내용을 담고 있음.

<표>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문(비교)

연번	공고번호 -차수	분류	공고명	공고 기관	금액	입력일시 (입찰마 감일시)
4	20190539157 -01	취소	서울의료원 난임외래진료과 개설 건축인테리어 공사 (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325,556,590	2019/05/3 0 14:18 (2019/06/0 5 10:00)
-	20190601138 -00	일반	서울의료원 외래진료과 개설 건축인테리어 공사	서울 특별시 서울 의료원	325,556,590	2019/06/0 3 16:46 (2019/06/1 1 10:00)

- 위 공공난임센터 구축 1단계에 해당하는 건축인테리어 공사가 서울의료원 자체 사업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계획한 난임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⑥ 속의 민주주의(검토보고서 공개시 삭제예정)

- 서울시는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을 만들었음. 속의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출처: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88%99%EC%9D%98_%EB%AF%BC%EC%A3%BC%EC%A3%BC%EC%9D%98)

-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대한 보완장치 중 하나로 논의가 제기 되고 있음.
 -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대의제도’와 같이 시민의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정치적 수요가 대의제도를 통해 반영되고 집행되지 못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場)으로서 숙의민주주의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도 전체 시민의 대표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익집단을 대변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인이 숙의과정을 주도¹⁰⁾할 경우에는 대의제도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난임센터 사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임. 숙의과정을 주도하는 집단이 다수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의 행정력이 일부 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음.
- 또한 집행부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제도화되지 못한 ‘숙의 민주주의’를 일회성 보여주기식 공론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의 가지는 책임성, 능률성, 전문성, 일관성 등이 확보되고, 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등이 지켜지며, 시민의 참여민주주의적 성격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소결

- 서울시의 숙의 민주주의 플랫폼이 최초로 선정한 아젠다인 난임부부지원 문제는 단순히 저출생고령화의 해법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라고 하겠음.

10) 고립된 공론화(enclave deliberation)

- 특히, 저출생고령화의 해소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난임센터의 필요성과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보임.
 - 민간대비 시술실적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회복과 그 당위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당사자단체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기 보다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시성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이 난임센터 설치에 있어서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별개로 예산편성전 사전 집행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서울의료원의 자체재원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나 보충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무엇보다 수혜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 당사자단체가 난임센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바, 시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서울형 유급병가

(1) 추경안 개요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의 대상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그러나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그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20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표 > 서울형 유급병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196,214	4,142,352	2,053,862	
사무관리비	56,000	56,000	0	-
전산개발비	0	160,000	△160,000	행복e음 사용으로 전산시스템 개발비 불필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140,214	3,926,352	2,213,862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 확대

(2) 추경안 검토

① 추경안의 발생 배경

- 시민건강국은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방법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재산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형 유급병가의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고(97,398명에서 143,257명) 이에 따라 서울형 유급병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했다고 밝히고 있음.

'18년 계획(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변경

【 변경 전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2인 가구)

⇒

【 변경 후 】

소득·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 ▶ 감사원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의 수혜대상 선정 시 재산은 많으나 월급이 적은 직장 가입자 등 부 적정 가족이 수혜를 받을 개연성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 **사회보장서비스 시행 시 소득·재산 평가방식으로 개편 권고**
【감사보고서('18년 12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 실태), 서울시 복지정책과-273호, '19. 1. 6.】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변경에 따른 사업대상 인원 변경

구 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대 상 자	97,398명		296,723명
입원환자	14,610명		78,897명

- ▶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인원 산출

○ 전산시스템 변경

구 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시스템명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요예산	1억 6천만원		비 예 산
가능시기	'19년 7월 이후		'19년 4월
운영기관	서울시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에 전산망 조회 등 권한 승인 요청을 위한 협의결과 소득·재산으로 기준 적용 시 행복e음 시스템 내에 유급병가 콘텐츠 사용 가능 협의 통보, **행복e음 승인 완료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493호, '19. 3. 8.】**
- ▶ 복지대상자 중복수혜조회, 신청 및 접수, 소득·재산조사 등 필수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행복e음 사용이 **신청자와 업무처리자 모두에게 효율적**이며, **전산개발비 1억6천 예산 절감에 기여**

②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내용 변경의 의미

- 동 사업 추정안의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의 사업대상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편성된 안임. 서울형 유급병가는 2019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해당자가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추계를 할 경우, 의료사각계층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추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재산이 많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이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있다고 하겠음.
 - 건강보험료 보다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소득과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복지재원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

③ 철저히 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업 변경

-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6천만원의 전산개발비를 편성한 바 있으나, 정보화예산타당성조사를 미이행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음. 이후 2019년 본 예산안에는 정보화예산타당성조사를 이행한 후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음.
-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진행과 이후 사업의 확산을 염두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제10대-제283회-제3차-보건복지

위원회-2018.09.10 월요일). 또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과약방식에 대하여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집행의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음.

- 그러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정보망)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시민건강국은 예산 심의 당시 ‘건강보험료 기준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다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사업변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김소양 위원

<생략>

정확히 가구소득 산정까지 가려면 오히려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생략>

- 김소양 위원

<생략>

-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소득 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소득 정보하고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자 의료이용 연계라거나 이런 부분의 편리성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단이 소득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④ 반복적인 예산 심의권 훼손 시도

- 집행부가 예산심의이후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사업의 대상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중대한 사업변경을 하게 됨. 시민건강국이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민건강국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시행시기를 3월이라고 하였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9년 6월에 시행하였음. 2019년 6월에 시행하기에 앞서서 사업대상확대로 인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난 상반기 임시회(2월·4월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임.
 -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이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정보화예산 타당성조사를 미이행하여 사전절차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1억6천만원의 전산개발비를 편성·제출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변경하고, (2019년 6월) 사업을 시행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바, 반복적으로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매우 해이졌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사료됨.

(3) 추경요건에의 부합여부

- 추경의 경우 차년도 본예산 편성에 기대지 않을 만한 이유의 시급성, 예비비 사용 등 타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사유로 하는 보충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집행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경우를 보면, 본예산 편성에 기대지 않을 만한 이유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 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담보하고 시민과의 신뢰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의 진행에 있어 행복e음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감사원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급하게 변경하는 점은 동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예비비지출에의 타당성이 없어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소결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되며, 국내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정책으로 그 정책의 실현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시행착오 외에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쉽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2019년 본예산심의에서 시민건강국이 제안했던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이용한 소득파악 방식인데, 현재에 와서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감사원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임.
-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볼 때 의회가 행복e음의 활용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복e음을 활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예산심의 당시 의회의 정책견인을 받아들인 결과 보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점은 의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 수 있는 사안임.

3)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1) 추경안 개요

- 출산지원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며, 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의 대상 및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난소기능검사(AMH)의 연령제한(기존 35세 이하)을 폐지하고, 난임 정액검사를 추가하는 등 사업의 대상변경 및 확대를 이유로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임.

<표 > 서울형 유급병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40,000	570,000	470,000	
사무관리비	70,000	7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70,000	500,000	4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프로그램(검진항목) 확대 운영 - AMH(여성 난소기능검사):105,570천원 - 정액검사(남성):134,000천원 - 엽산제(남·여):230,650천원

(1) 추경안 검토

① 추경안의 발생 배경

- 서울시의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제안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제에 대하여 남녀에게 모두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서울시가 정책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사업의 의의

- 현재 12개 자치구(중구, 광진, 성북, 양천, 성동,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동작, 강남)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은 가임기 남녀에게 고위험 임신에 대한 설문평가, 엽산제 제공, 건강검진, 상담과 자원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같은 사업은 남녀가 함께 준비하는 성인지적 접근의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난임의 경우 남녀 중 일방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인불명의 난임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임신준비단계부터 적절한 단계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③ 사업의 주요내용

- 동 사업은 임신위험요인 설문평가, 건강검진(10개항목), 남녀에 대한 비타민 및 엽산제 복용 필요성 설명 및 제공,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액검사와 여성 난소기능검사가 추가되는데 이때 난소기능검사에 대한 나이제한 폐지 등 보편적인 난임지원서비스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사업관련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음. 예를 들어 정액검사를 하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급여를 참여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나,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 보건소에 급여를 신청하는 주체가 사업 참여자인지 의료기관인지 등은 추경안 심의에 앞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④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 올바른 제시 필요

-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성별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이에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하고 성불평등 개선이 큰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 동 사업은 그간 여성위주로 지원되던 난임지원사업을 남성에게 확대하는 안으로 여성위주의 지원정책은 난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점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지원하여 양성이 평등한 난임지원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제도화 되어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배분과 집행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평등 실현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제도임.

- 집행부는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2000년대에 들어서 점차 세계적으로 임신 전 남성들의 건강관리 및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신 전 남성 건강관리에 대한 논의 및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임신 전 관리를 위한 검사는 여성과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 전 관리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260명의 여성중 61명(23.5%)의 남자 배우자(평균 36.6세)만이 임신 전 상담을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했으며 이들 중 정액검사 이상 소견은 28명(45.9%)등이 진단되었음.
- 이를 통해 현재 임신 노력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남성의 나이가 많고, 정액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다수의 남성들이 임신 전 관리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유로 성인지 예산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목표치의 성비가 제시되지 않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표 > 남녀건강출산지원 사업 성인지 성과지표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대 (남성참여비율 점진적 확대) (참여자 수)	448명	2,000명	5,000명

- 전술한 바, 성인지 예산은 양성에 평등하게 예산이 분배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성과목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의 성비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성인지 예산서의 목표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3) 소결

- 전술한 바, 성인지 예산은 양성에 평등하게 예산이 분배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성과목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의 성비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성인지 예산서의 목표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업내용이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추경안 편성에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민의의 수렴절차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적 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에 올바른 사업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인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4) 이 외의 사업에 대하여

(1)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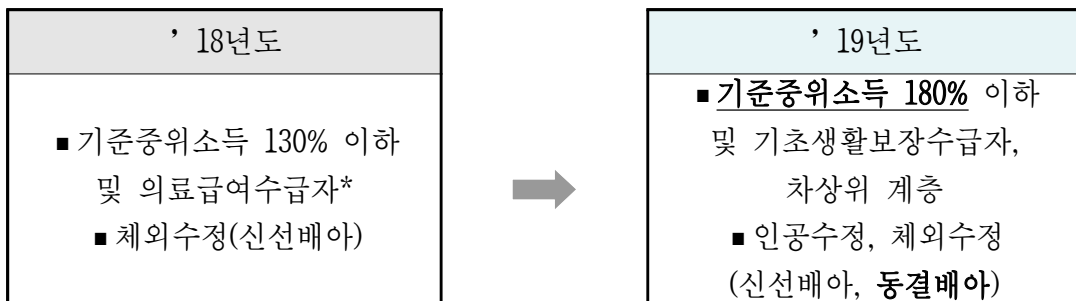
-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은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으로 의료접근성 강화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 6개월치의 예산만 편성되어 온바 이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안임.
- 야간휴일진료기관의 운영은 평일 19시~23시, 토요일 15시~18시, 일요일 및 공휴일 09시~18시에 운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간에 환자가 내원할 경우, 사례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임.
- 동 사업 추경안의 경우 예산심의 당시 반년치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바, 추경안을 염두에 두고 본 예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과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반년치 예산 편성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우회하여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안 제출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 시도로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난임부부지원 사업

-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되어 왔음. 이는 국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51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이는 난임시술비 지원의 대상이 변동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비매칭하여 편성한 것임.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은 만 44세 이하 건강보험적용 난임 시술자 중 중위소득 180%이하의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난임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표>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 내역
계	(x2,637,200) 5,713,950	(x185,900) 402,783	(x2,451,300) 5,311,167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2,637,200) 5,713,950	(x185,900) 402,783	(x2,451,300) 5,311,167	◦난임의료비 지원 확정내시 변경



※ 시술별 지원 횟수: 제외수정(신선배아) 4회, 제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최근 시술별지원횟수를 초과하는 대상과 소득조건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이 아닌 소득과 횟수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이 민간에서 제기된 바 있음. 이들은 소득기준보다는 초과하나 1회당 드는 시술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난임치료를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난임치료의 사각지대가 횟수 소진과 특정 소득을 초과하는 계층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동 사업예산이 정부의 사업변경에 따라 변경내시된 국비를 반영하는 형태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고려해 볼 때 소득이나 횟수 제한을 제거하는 형태의 사업변경은 불가능할 것임. 그러나 시민과 전문가의 지적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안들이 수용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 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절차적 과정에 대한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특히, 난임지원사업이 난임센터의 설치가 전부가 아니라 난임지원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각종 사업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사업을 배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다. 2019년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의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 현재까지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아직 2019년도 중반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앞으로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1) 시민건강국 집행실적

- 시민건강국 사업비, 기본경비 등 249개 사업 예산현액 479,108백만원 중 5월말 기준 210,995백만원을 집행(집행률 44.0%)하였음. 시기를 참고할 때 비교적 양호한 집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26.2%)과 서북병원(23.7%)의 경우 집행율이 낮아 적절하지 못한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특히, 두 사업소의 경우 자본적 지출이 많은 관계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할 가능성이 높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 바 집행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시민건강국 2019년 예산 집행율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집행률 (나)/(가)	집행잔액 (가)-(나)
총계	479,108,218	210,995,262	44.0	268,112,956
보건의료정책과	166,677,061	72,159,790	43.3	94,517,271
건강증진과	122,606,778	67,793,280	55.3	54,813,497
식품정책과	10,672,751	5,204,076	48.8	5,468,675
생활보건과	125,462,589	49,827,535	39.7	75,635,054
동물보호과	6,421,165	2,688,193	41.9	3,732,972
보건환경연구원	13,792,220	3,610,513	26.2	10,181,707
어린이병원	8,688,135	2,815,539	32.4	5,872,596
은평병원	7,935,595	2,909,268	36.7	5,026,327
서북병원	16,851,924	3,987,066	23.7	12,864,858

2)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 세부사업별로 집행률 20% 미만의 사업을 집계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사업소인 직영병원 등에서 자본사업의 집행률 미미한 사업이 많아 조달방식등

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식품정책과의 경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의 경우 집행률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시민건강국 세부사업별 집행율 20% 미만 사업(2019)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원인행위액	지출액 (나)	집행률 (나)/(가)	집행잔액 (가)-(나)
보건의료정책과						
1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12,660,552	4,974,821	616,134	4.9	12,044,418
2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	22,540	22,000	-	0.0	22,540
3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151,080	26,138	26,138	17.3	124,942
4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4,736,000	576,000	576,000	12.2	4,160,000
5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607,608	3,000	3,000	0.5	604,608
6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40,333	-	-	0.0	140,333
7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50,000	-	-	0.0	50,000
8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547,727	-	-	0.0	1,547,727
9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472,800	-	-	0.0	472,800
1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150,000	12,235	12,235	8.2	137,765
11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1,000,000	5,000	5,000	0.5	995,000
12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1,727,000	-	-	0.0	1,727,000
13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시민참여)	260,000	-	-	0.0	260,000
건강증진과						
14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390,000	10,000	10,000	2.6	380,000
15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100,000	-	-	0.0	100,000
16	음주폐해 예방사업	100,000	2,000	2,000	2.0	98,000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원인행위액	지출액 (나)	집행률 (나)/(가)	집행잔액 (가)-(나)
17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29,664	-	-	0.0	29,664
18	보건소 유축기 대여사업(시민참여)	16,000	16,000	-	0.0	16,000
식품정책과						
19	축산물 이력제 실시	560	-	-	0.0	560
20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32,500	-	-	0.0	32,500
질병관리과						
21	서울시 미용예술경현대회 개최	150,000	4,125	4,125	2.8	145,875
22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6,000	-	-	0.0	6,000
23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및 사업 추진	750,000	-	-	0.0	750,000
24	지역아동센터 실내환경 관리(시민참여)	162,000	2,000	2,000	1.2	160,000
25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1,083,490	188,820	159,870	14.8	923,620
26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 관리사업	40,000	5,259	5,259	13.1	34,741
27	인력운영비-주요감염병 표본감시	18,440	1,879	1,879	10.2	16,561
동물보호과						
28	반려견 놀이터 조성	500,000	-	-	0.0	500,000
29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시민참여)	500,000	80,000	80,000	16.0	420,000
30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2,000	-	-	0.0	2,000
보건환경연구원						
31	식품 안전성 검사	558,659	87,306	87,306	15.6	471,353
32	의약품 안전성 검사	209,480	33,378	33,378	15.9	176,102
33	가짜식품 판별 검사	229,500	35,995	35,995	15.7	193,505
34	시도가축방역-구체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국비)	312,275	52,832	32,412	10.4	279,863
35	축산물 검사비 - 항생제 내성균 보조원(국비)	20,000	3,116	3,116	15.6	16,884
36	축산물검사-도축검사운 영 축산물검사장비	300,000	-	-	0.0	300,000
37	축산물안전성검사-축산 물품질관리(국비)	230,000	-	-	0.0	230,000
38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120,000	58,300	-	0.0	120,000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원인행위액	지출액 (나)	집행률 (나)/(가)	집행잔액 (가)-(나)
39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70,000	13,517	13,517	19.3	56,483
40	대기 오염물질 검사	1,500,180	835,903	196,726	13.1	1,303,454
41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350,000	-	-	0.0	350,000
42	인력운영비-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68,810	12,286	12,286	17.9	56,524
어린이병원						
43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30	178,313	55,351	13.7	349,679
44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 교체	1,270,410	-	-	0.0	1,270,410
은평병원						
45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76,435	9,075	9,075	11.9	67,360
46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58,080	10,390	10,390	17.9	47,690
서북병원						
47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90,861	1,656,219	752,496	18.4	3,338,365
48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656,370	86,196	86,196	13.1	570,174
49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구축	2,800,000	-	-	0.0	2,800,000

4 종합의견

- 금번 추경안은 난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출되었음. 이들 사업은 2019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경안의 경우 집행부의 사업계획이 최초에 충실하지 못하여 중도에 변경하고, 사업 시행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은 집행부가 면밀하게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다고 할 것임.

- 또한 서울의료원 난임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서와 의회 사이의 사전적 교섭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할 것임.
-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기간이 짧고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적 사전 절차 이행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민의의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는 사업(서울의료원 난임지원센터 설치)도 있다고 사료됨.
-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